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1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12월 18일

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이 춘 배

나. 제안이유

- 2007.11.26. 옥성자연휴양림 개장이후 적극적인 휴양림 홍보와
이용 방문객의 증가로 인해 1년 만에 정상운영의 궤도에 진입
하였으나
- 공직의 『구조 조정으로 인한 직제 및 인원 증가 불가』 방침에
따라 지속적인 출장지도 및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
- 위탁운영을 통해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위 치 : 옥성면 주아리 산144번지 외 4필
- 면 적 : 153ha
- 시 설 물 : 관리사무실, 숲속의 집 10동을 포함한 휴양림의 모든 시설물

라. 참고사항
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
- 「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」 제13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- 본 동의안은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제3항에 의거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
- 2007. 11. 26 개장이후 다양하고 편안한 휴양림 시설과 이용 방문객 증가로 정상운영 궤도에 진입하였으나,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동결로 직제 및 인원 증원 불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휴양림 출장 및 지도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방공단인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임
- 다만,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계약안을 마련하고 타 자치단체의 자연휴양림 위탁 운영 사례 및 민간위탁 타당성을 확보한 후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·휴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평가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